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진해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6. 06. 01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직원	견책(3명), 경고(7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중소형상가 담보대출 심사 소홀 등

○ 기업시설자금대출 취급 시 시설자금 한도를 초과하여 산출하는 등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대출 업무처리 부적정

○ 중요 심사서류 확인 부적정, 대출한도 심사 기준 미준수 등 영업점 대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하였으며, 여신심사 및 대출심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< 관련법규 >

○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1편 제8조(소요자금 대출가능한도), 제15조(대출상당), 제17조(대출실행절차 및 대출 신청시 징구 서류), 제19조(대출서류의 징구 및 확인), 제42조(승인대상 대출금), 제43조(대출 영업점 업무처리), 제44조(승인신청서 제출서류), 제45조(승인대출금 업무처리), 제48조의6(업무처리), 제54조(심사사항), 제85조의37(적용대상), 제85조의38(업무처리기준), 제389조(대출심사), 제396조(공동대출 협약), 제401조(구성원), 제402조(의장 및 간사), 제403조(개최)

○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3편 제3조(상당 및 서류징구), 제6조(신용조사 및 평가대상), 제8조(신용조사 및 평가 구분), 제10조(조사자료), 제17조(신용평가의 구분), 제18조(신용평가 방법), 제21조(신용등급 산출방법), 제27조(일반사항), 제38조(소요자금 산출방법), 제39조(소요자금 한도산정에 대한 예외), 제40조(소요자금 산정), 제44조(대출취급기준), 제46조의2(시설자금 대출한도),

○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4편 제1조(관리원칙), 제3조(중점관리대상), 제5조(채무자 실태조사)

○ <서식 제268호> {이자상환능력 검토 의견서(법인용)}

○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5편 제164조(채무관계자), 제165조(신용조사), 제166조(연대보증), 제170조(대출한도 및 담보취득방법 등)

○ 「상호금융 담보물 가격조사 업무방법(예)」 제32조(가격조사서 또는 감정평가서 심사), 제35조(외부감정평가서의 심사)